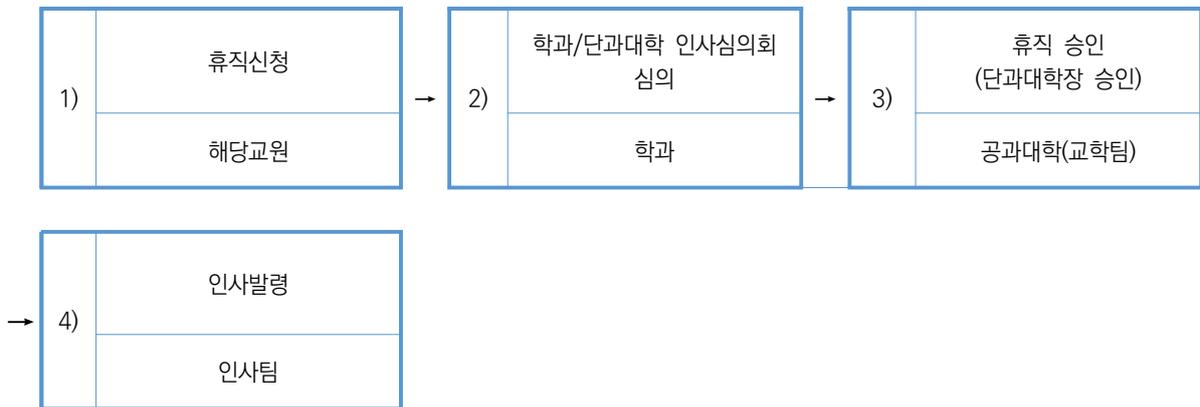


업무구분	단위업무	1.9 전임직교원 복무 - 휴직		
교원인사	작성일자	2021.9.	연락처	2491

1. 업무개요

- 가. 업무내용 : 교원의 휴직에 관한 활동을 승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년중
- 다. 관련근거 : 인사규정 제41조 및 제42조, 휴직관련규정 운영기준

2. 업무처리절차



3. 업무처리내용

- 1) 인사규정에서 정한 휴직사유 발생 시 휴직신청
- 2) 학과/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
 - ※ 휴직 중 상병휴직, 육아휴직인 경우 학과/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생략
- 3) 휴직 승인 및 인사발령

4. 관련 규정

- 가. 인사규정 제41조, 제42조
- 나. 휴직관련규정 운영기준

5. 활용서식

가. 휴직원

6. 기타 주요 참고사항

• 휴직허용 사유 및 기간

-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(1년 이내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)
-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, 소집 또는 동원된 때 (기간 만료시 까지)
-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재해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(3개월)
-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(기간 만료시 까지)
- 국내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(1년 이내, 재직 중 총 3년 이내)
- 타기관에 기한부 또는 임시로 고용된 때 (3년 이내, 총 6년 이내)
 - 국제협약에 의하거나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에 일시 참여하는 경우
 - 교육·연구에 필요한 첨단 이론 및 기술습득을 위해 선진외국학술 연구기관에 일시 고용되는 경우(초빙교수, 방문교수, 객원교수, 초빙연구원 등)
 - 과학기술원이 출자한 기관의 관리를 위한 경우
 - 창업기업의 창업자로 선정된 자가 기업을 설립한 경우
 - 기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여 고용되는 경우(정부기관, 정부출연기관 등)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 포함)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(3년 이내)
- 근로자가 “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“가족돌봄휴직”을 신청한 때 (최장 90일 이내)